

충청북도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23/

제출년월일: 1997. 7.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충청북도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장학생의 선발은 당해학교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중학생은 지역교육장)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중복 심의기능을 배제하고, 당해학교로 선발권한을 위임하고 특별장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 주요골자

- 학교장이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하여 교육감이 선정하는 것을 학교장이 선정하도록 함(제4조).
- 탈락자 발생시 승계 추천하여 교육감이 선정하는 것을 자체에서 승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장학생 추천서를 당해 학교장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함(별지).

□ 개정근거 : 해당없음

□ 조례안 : 덧붙임

□ 참고사항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특별장학생의 선정) 중·고등학교의 장은 별지 추천 서식에 의한 특별장학생 후보자중에서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개시 1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

제8조중 "승계 추천할 수 있다."를 "승계 선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장학생 추천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